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

-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111건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석원)는 7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준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7건에 대하여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2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2건)하였으며,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기 지정 받았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1단계)」에 대한 지정(7건) 내용을 변경하였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이를 통해 1단계 대비 예금토큰의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결제 기능 외에 송금 기능이 추가되며, 사업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 ❶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❷생체인증 기능, ❸충분한 보유·송금한도***, ❹직접지급 방식****이 추가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사용처 측면에서는 ❶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급 개설, ❷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증대되어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자) 예금토큰 지갑수 최대 10만개→50만개로 확대

(사용처) 기존 가맹점 외 소상공인,대형사업체 등으로 확대

** 예) 결제시 예금토큰지갑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예금계좌에서 부족금액이 예금토큰으로 전환

*** 보유한도 : 예금토큰 지갑당 100만원(누적 500만원) → 1천만원(누적 1억원) 등

송금한도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100만원(1회), 500만원(1일)

[법인] 인터넷10억원(1회), 50억원(1일), 모바일1억원(1회), 5억원(1일)

**** 스마트계약을 통한 예금토큰 지급방식에 캐시백(환급) 외 직접지급 방식 등 추가허용

또한, 오렌지스퀘어의 ‘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한 외국인이 국내 본인확인 절차의 제약 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현금 휴대 및 환전 부담이 줄고 국내 관광·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본조달 비용 및 비대면 인프라, 부산은행의 우수한 기업심사 역량 등 양 은행의 강점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대출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5건)	오렌지스퀘어(1건)	- 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1건)	-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
	경남은행 및 아이엠뱅크 (2건)	- CBDC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1건)	- 공동대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7건)	국민은행 외 6개사(7건)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CBDC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 2단계 테스트를 위해 이용고객, 사용처 범위 확대, 송금 기능 추가 등 변경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530)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41)
			사무관	홍연제 (02-2100-2536)
			사무관	이혜인 (02-2100-2872)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02-2100-2952)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김해은 (02-2100-2979)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나윤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김하민 (02-2100-2622)
<공동>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은주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김정현 (02-2100-2913)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임은정 (02-3145-7545)
		담당자	팀 장	손인호 (02-3145-7125)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은정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이종진 (02-3145-8022)
<공동>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변재은 (02-3145-8780)
		담당자	팀 장	류한은 (02-3145-8795)
		담당자	팀 장	조강훈 (02-3145-8782)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5건] 〉

①~②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2건)

(경남은행 및 아이엠뱅크)

[서비스 주요내용]

지정 은행(2개사)은 한국은행이 '26.3월 발표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따라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1단계와 달리 이번 2단계 테스트에서는 참여자·사용처 수가 확대되고, 사업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이 추가되며, 단순 결제 외 지갑간 송금기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기능이 추가됩니다.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

** 기존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될 수 있는 증표)으로 변환하는 과정

※ (기존 지정사례)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은 '24.10월 한국은행 CBDC 시스템을 통한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바 있음 (1단계 CBDC 테스트)

[특례내용]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9조의 2·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 제18조 제2항 및 제23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정보처리위탁규정 제4조

▲예금 해당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한 바우처 기능 등 관련) 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개인 및 법인에게 충분한 보유한도를 부여하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예금토큰의 양도·발행시 은행 전산시스템 대신 CBDC 시스템을 이용하고, ▲은행이 예금토큰의 원장(장부)을 개별 은행이 아닌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지정 서비스를 통해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국고금 집행 사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스마트계약 기능을 기반으로 정산절차 간소화, 사후검증 인력 절감, 부정수급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서비스 대비 다양한 편의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체인증, 예금토큰 자동입출금 전환,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송금기능 등

[주요 부가조건]

※ 기존 1단계에 적용되었던 부가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2단계 시행에 따라 추가·변경되는 사업 내용 등을 반영하여 예금토큰 보유·송금한도, 예금토큰 송금 및 이용규모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등의 조건부가

지정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량에 대해서도 ▲은행법령상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예대율, LCR)를 준수해야 하고, ▲예금자 보호 적용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예금 토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하며, ▲테스트 기간 종료 후의 기록 보존·파기 방안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물품·서비스의 환불 등에 요구되는 사용자 - 이용자 간 반대거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용처가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등을 약관 등에 명시 하며, ▲전자지갑 개설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별도 동의를 징구하고, ▲관련 법령의 원칙 및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前 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능력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 기존 부가조건)

아울러, 지정은행은 ▲개인 및 법인의 예금토큰 보유한도 및 송금한도를 준수하고, ▲블록체인 기반 거래 특성, 송금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 관리방안과 예금토큰 이용규모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④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2건)

(오렌지스퀘어,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 주요내용]

방한 외국인이 무인환전기기(오렌지스퀘어) 또는 모바일 앱(네이버파이낸셜)을 이용하여 발급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가맹점 결제에 사용하는 서비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본인확인 방법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방한 외국인에 대하여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상향할 경우 파편화된 금융수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국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부가조건]

본인확인기관에서 본인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조 여권 및 타인여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자여권의 IC 칩 정보를 휴대폰 NFC 기능으로 확인하고 여권·실시간 안면인증 대조 수단을 사용하여 실물 전자여권 소유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전자여권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기 방식 및 안면인증 대조 수단을 사용하여 본인인증수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오렌지스퀘어가 발급하는 실물카드의 경우 여권정보 확인 및 검증 등을 거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재사용 위험이 있으므로, 최초 충전일로부터 90일 경과시 해당 카드를 통한 재충전시에는 여권 스캔 및 안면인증을 다시 거쳐 등록된 여권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공동대출 서비스 (1건)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대출심사를 실시한 후, 양행이 합의한 대출한도·금리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공동대출 서비스

[특례내용] ①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②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③신용정보법 제4조, 제27조의2

①양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계약 체결·대출실행 업무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②카카오뱅크가 부산은행 대출분에 대한 대출관리 업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③또한, 카카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부산은행 대출분에 대한 연체사실 안내 및 연체금을 수령하는 한편, 부산은행은 카카오뱅크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본조달 비용 및 비대면 플랫폼 인프라 및 부산은행의 우수한 기업심사 역량 등 양 은행의 강점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동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실행 화면 등을 구성하고 상품 약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금융사고 등에 대한 양 은행 간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수용 (7건) >

①~⑦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 (7건)

◇ 대상 기업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서비스 개요] ('24.10.30 지정)

지정 은행(7개사)은 한국은행이 '23.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금융위·금감원 공동 발표)」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정내용 변경 수용]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프로젝트 한강)의 2단계 테스트는 기존 1단계 대비 이용자와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지갑 간 송금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일반 대금 결제 및 디지털 바우처 기반 결제서비스에 더해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가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검증합니다.

아울러, 이용자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추가합니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금토큰 자동입출금 전환 기능, 생체인증 기능 등을 추가하고 충분한 예금토큰 보유·송금한도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과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처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의 주요 변경내용에 따른 소비자 편의성 제고,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지정 내용 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